

December 27, 2013

유럽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간소화 방안」 주요내용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는 2013. 12. 5. 기업결합심사 간소화 방안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간소화 방안은 M&A거래 당사자가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한 과다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간이절차의 확대

집행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간이 신고양식(Short Form CO)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장상황 관련 자료, 거래선 관련 자료 및 내부 의사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가 축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전 규제에 따르면 간이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본 간소화 방안에서는 이 중 ②시장점유율 합산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시장집중도가 일정수준(HHI 증가분 150) 미만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간이절차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집행위원회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행	간소화 방안
① 결합회사들이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거나(수평형 결합) 수직적 거래관계(수직형 결합)에 있지 않은 경우	→ 현행과 동일
②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산이 15% 미만(수평형 결합)인 경우나 25% 미만(수직형 결합)인 경우	→ 시장점유율 합산 기준이 각각 20%(수평형 결합), 30%(수직형 결합)으로 확대
③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 유럽경제구역(EEA) 내에서의 매출이 1억 유로 미만인 경우	→ 현행과 동일
④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2. 제출 정보 범위의 조정

EU 기업결합 규칙(EU Merger Regulation)에 따르면 신고서 양식은 (1) 일반신고 양식(Form CO), (2) 간이신고 양식(Short Form CO)으로 나뉘는바, 본 간소화 방안에 따라 Form CO와 Short Form CO가 개정되어 기업결합 신고시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정보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집행위원회는 신고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일지라도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회사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제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집행위원회는 5영업일 이내에 면제의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국내 기업간에 국내 시장을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계열회사 포함)은 EEA 내에서 일정한 매출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바, 본 간소화 방안에 따라 추후 EEA 내에서 활동이 전혀 없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략한 절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거래 자체에 관한 정보 외에 당사자들의 사업내용 및 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집행위원회는 EEA 내에서 활동이 없는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본 방안에서는 그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 방안에 따라 내부자료의 제출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당사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본 방안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습니다. 본 방안에 따르면 (1) 수평형 결합이나 수직형 결합에 관한 Short Form CO에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해당 거래 관련 의사결정에서 작성된 내부 서류가 새로운 제출대상에 포함되었고, (2) 일반 Form CO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부 서류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시장상황에 관한 내부 분석자료·보고서가 새로운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시장정보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확립하여, 신고회사가 주장하는 신고회사가 주장하는 시장 확정에 따른 시장정보뿐만 아니라 “확정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원회는 기존 심사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집행위원회의 시장 확정 선례가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시장 확정방식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시장 정보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심사과정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기업결합신고 전 논의절차(Pre-notification discussion)의 간소화

기업결합신고 전 논의절차(Pre-notification discussion)는 정식 신고 이전에 집행위원회에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후 정식 신고에서 제출할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종전 집행위원회 모범규준(Best Practices on the conduct of EC merger control proceeding)에서는 늦어도 정식 신고 2주 전에는 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방안에 따라 개정된 Short Form Co에 따르면, 간이 절차에서 결합회사들이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래와 같은 신고 전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이 명백하게 확정 가능하고 그 관련시장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나 수직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본 개정 내용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결론

본 간소화 방안은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몇 가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집행위원회가 의도한 거래당사자 부담 경감의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본 방안에 따라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점,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해 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 EEA 내에서의 활동이 없는 합작기업 설립의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점 등은 거래당사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유럽의 관련 시장 정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았는데, 본 방안은 그러한 국내 기업들에게 유익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는 우리나라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거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쟁제한성의 여지가 거의 없는 M&A거래인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영 미국변호사	TEL. 02 316 4692	E-Mail. jyoungpark@shinkim.com
● 김현아 변호사	TEL. 02 316 4008	E-Mail. hakim@shinkim.com
● 이상돈 변호사	TEL. 02 316 4638	E-Mail. sdlee@shinkim.com
● 박재인 변호사	TEL. 02 316 1716	E-Mail. jipark@shinkim.com